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도참고자료**	(배포) 2019. 3. 18(월)
3월 19일(화) 11:30(국무회의 종료) 이후 사용		
비고	#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	과장 김정환, 사무관 이상일 (044-200-2652, 2654)
	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	과장 홍성호, 서기관 배동현 (044-205-6360, 6361)
	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	과장 황병소, 사무관 정두식 (044-203-5230, 5234)
	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	과장 김영우, 서기관 정수성 (044-201-6860, 6865)

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

□ **정부**는 **3월 19일(화) 국무회의**에서 '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' 등 국회에서 이송된 **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**을 의결했습니다.

□ 이번에 **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(산업부 소관)

* 곽대훈·권칠승·윤한홍·이찬열·정재호·조배숙 의원안 통합안

□ **액화석유가스(LPG)**의 **자동차 연료 사용제한**을 **폐지**했습니다.

○ **소형**(1,600cc미만)·**중형**(1,600~2,000cc미만)·**대형**(2,000cc이상) **승용자동차**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, **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**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*이 적은 **LPG차량 보급이 확산**될 전망입니다.

* LPG차 NOx 배출량(실도로, 국립환경과학원) : 휘발유차 대비 3배↓, 경유차 대비 93배↓

** LPG차 등록대수('18년말, 국토교통부) : 203.5만대 (전체 등록대수의 8.77%)

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(환경부 소관)

* 신창현·임이자 의원안 통합안

□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**'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'의 설치·운영규정**을 **강화**하고, **정책영향 분석 기능**을 추가했습니다.

○ 미세먼지 **배출원 분석**과 **배출량 통계**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**국내·외 기여도 분석** 및 **공동연구**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, 정부출연기관, 대학교 등 조사·연구기관을 **'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'**로 지정·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.

○ **국공립 기관**뿐만 아니라 **민간 기관**의 **전문역량**을 **활용**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 **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**해 나가겠습니다.

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(행안부 소관)

* 강효상·김병욱·김승희·신용현 의원안 통합안

□ **'미세먼지로 인한 피해'**를 **사회재난**으로 지정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**재난대응체계**에 따른 **예방·대비**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○ 먼저, **정부·지자체 합동**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**점검**을 실시하는 한편, **관계기관 합동훈련**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,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.

○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**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**을 마련하는 한편,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**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**를 가동해 **행·재정적 조치**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**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**하여, **미세먼지 저감** 및 **취약계층 보호**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.

□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**다음 주 중에 공포·시행될 예정**이며,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*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.

* △학교보건법 개정안, △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, △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, △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, △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

※(붙임)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

붙 임 **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**

	기 존	변 경
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	◆ **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** - 소형(1600cc미만), 중형(1600cc~2000cc미만), 대형(2000cc이상)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※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◆ **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**	◆ **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** ◆ **과태료 규정 삭제**
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	◆ **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·운영** - "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는 임의규정 -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 기능 부여	◆ **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·운영** - "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-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,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◆ **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** -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※ 정부출연연구기관, 학교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,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
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	◆ **사회재난** -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,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, 감염병·가축감염병 확산 등 ◆ **예방·대비 단계** - 미세먼지 예보 - 고농도 비상저감조치·상한제약·건강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◆ **대응 단계** - 미세먼지 경보 -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(수도권 차량 2부제, 휴교 권고 등) - 자체 상황실 구성·운영	◆ **사회재난** -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◆ **예방·대비 단계** - 긴급안전점검 실시 -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·운영 -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◆ **대응 단계** - 재난사태 선포 가능 -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, 인력·물자 동원 등 ◆ **복구** - 특별재난지역 선포*를 통해 구호금, 생계비,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*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